



문서번호	재무과-12983
결재일자	2016.5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계약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	
정찬미	김종수	김성철	05/11 박기웅	
협조				

「2016년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계획」



기획재정국
(재무과)

2016년도 상반기 불용물품 처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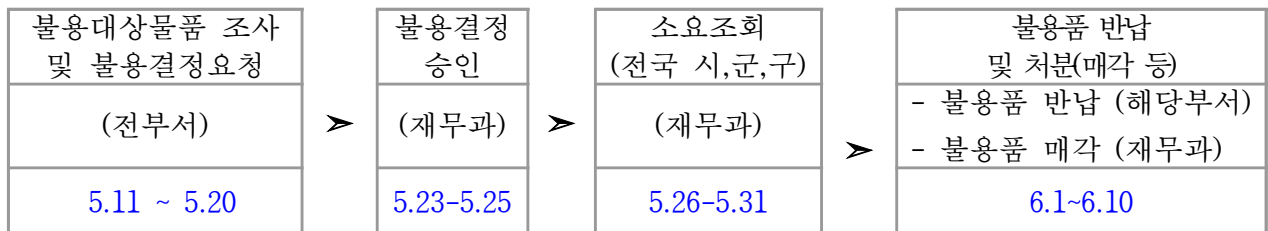
전 부서에서 관리중인 물품중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 및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(불용의결정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9조 ~ 제71조
 - 불용결정, 불용품의 처분, 불용품의 매각

II 추진개요

- 추진기간: 2016. 5. 11 ~ 2016. 6. 10
- 대상물품: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(매각, 폐기)대상 물품
- 대상부서: 전 부서(구본청, 구의회, 보건소, 동주민센터)
- 추진절차



III 세부추진 계획

- 불용대상물품 조사

- 조사기간: 2016. 5. 11. ~ 5. 18
- 조사대상: 관리대상 물품중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물품
 -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
 -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
 -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 -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 -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 -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 -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
 -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
- 조사기준(방법)
 - 신품: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
 - 중고품: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
 - 요정비품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(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)
 - 폐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(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)과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

□ 불용결정 등록 및 통보서 제출

○ 불용결정(승인)권자

- 본청: 물품관리관(재무과장)
- 구의회, 보건소, 동주민센터: 기관별 물품관리관
- ** 취득단가 1천만원 초과 물품은 본청 물품관리관에 승인요청

○ 불용결정등록 및 통보서 생성

- 대상입력: 새울행정>물품관리>처분관리>불용결정관리>불용결정처리 > 검색> 불용대상물품 선택 후 “불용결정등록” 클릭 > 물품상태 등 입력후 “불용결정” 클릭
- 통보서 송신: 새울행정>물품관리>처분관리>불용결정관리> 불용결정 통보서> 불용일자 입력 후 검색> “기안문 전송” 클릭 > 기안 후 재무과에 송신(공문 제출)

□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품 소요조회

- 불용결정 승인: 부서별 불용요청 물품에 대해 심사승인

- 불용품 소요조회: 불용품중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재무과에서 전국 시,군,구에 일괄조회 실시 → 소요가 있을 경우 관리전환
- ※물품당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물품→감정평가후 온비드에 매각공고 요청

□ 불용품 반납 및 처분

- 불용품 반납: 2016. 6. 1 이후에 별도공문 시행예정(일자 및 장소)
- 불용품 처분(매각등): 일반입찰(원칙) 또는 수의계약(물품당 처분단가 10만원이하하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)

IV 행정사항

□ 불용처분대상 물품 승인요청 및 목록 제출

- 제출기한: 2016. 5. 20.(금)까지
- 제출방법: 새울행정(물품관리)에서 불용결정통보서 생성후 재무과에 전자문서 제출
 - 본청 부서: 불용결정 승인요청(목록제출)
 - 구의회, 보건소, 동주민센터: 재무과 승인대상 물품은 승인 후 목록제출

□ 불용승인 물품은 처분전까지 부서에서 물품관리 철저

- 붙임 1. 조달청 고시문 1부(물품내용연수)
 2. 불용결정 전산처리 매뉴얼 1부.
 3. 불용결정 관련 법령조문 1부. 끝.